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74
------------	------

2016년 6월 20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6. 5. 3. 박진형 의원 발의(찬성자 10명)(2016. 5. 13 회부)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개수를 2개소 이내로 하고, 다른 현수막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3개소까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현수막 설치개수를 제한함에 따라 현수막 추가 게시를 원하는 사업자의 광고기회가 사라지고, 현수막 추가 게시로 자치구가 얻을 수 있는 도로 점용료 및 광고 수입금의 징수기회가 사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현수막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현수막 설치 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자치구 관할구역 내 사업자의 광고기회 확대와 함께 자치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현수막 개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항제1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한 업소 또는 신청인이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의 수를 최대 3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박진형 의원이 발의하여 2016년 5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현수막¹⁾의 표시방법 및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이하 “업소등”이라 함)이 동시에 2개소 이하에 게시할 수 있으나,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²⁾.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 원칙 : 2개소 지정게시대 동시 게시 가능 - 예외 : 다른 현수막의 신청이 없을 때 3개소까지 가능	- 원칙 : 현행과 같음 - 예외 : 다른 현수막의 신청이 없을 때 <u>게시</u> 제한 개수 규정 삭제

1) 현수막이란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하는 것으로, 신고대상 광고물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7호 및 제5조).

2) 현수막 신고절차 : 게시신고는 구청(위탁업체)에 하며, 1회 게시기간은 15일, 신고 수수료 및 사용료는 구청에 접수하는 경우 3~4만원, 위탁업체에 하는 경우 13~14만원(현수막 제작비 포함) 정도임.

- 개정조례안은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3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과 같이 제한 규정을 없애려는 것으로서, 지역 소상공인의 광고기회 확대 및 불법 현수막 설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하나의 업소등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1회 15일인 바, 게시기간내 다른 업소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3개소까지로의 확대에 의해 다른 업소등의 현수막 게시 기회가 감소할 염려가 있다 하겠으나, 동일한 업소등이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일한 지정게시대내 2회 이상 계속 게시할 수 없으므로³⁾,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분양광고 대행 등 일부 대규모 자본을 가진 업체에 집중 이용됨으로써 해당 자치구 소상공인의 현수막 게시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의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2015년말 기준 서울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총 71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나의 업소등이 1회에 2개소 게시한 현황은 5,127, 3개소 게시는 2,809 업소등임(【붙임】 참조).

3)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조례 제12조제2항제3호).

【붙임】 자치구별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게시 현황

연번	자치구명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15.12.말 기준)	'15년도 현수막 게시 현황	
			2개소 게시	3개소 게시
1	종로구	7	83	33
2	중 구	11	140	58
3	용산구	22	109	174
4	성동구	34	102	173
5	광진구	7	51	24
6	동대문구	18	198	283
7	중랑구	20	267	199
8	성북구	22	120	31
9	강북구	17	161	1
10	도봉구	44	442	227
11	노원구	122	184	277
12	은평구	189	292	348
13	서대문구	20	293	122
14	마포구	18	164	41
15	양천구	15	595	0
16	강서구	14	94	0
17	구로구	34	168	288
18	금천구	19	207	166
19	영등포구	36	999	0
20	동작구	11	186	14
21	관악구	7	73	85
22	서초구	0	0	0
23	강남구	0	0	0
24	송파구	14	119	146
25	강동구	18	80	119
	합 계	719	5,127	2,80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과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